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리상담 및 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 위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532)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7. 17.
3. 회 부 일 : 2025. 7. 1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1항 신설).

나.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보고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2항 등).

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등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등 수립시 정착실태 결과 포함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외에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한 결과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③ (생 략)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u>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⑤·⑥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착 실태 등 파악-----.</u> ⑤·⑥ (현행과 같음)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¹⁾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 및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제22조제3항²⁾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 이탈주민의 교육현황, 취업현황, 주거현황, 생활보호 현황 및 경제 상태에 관한 현황 등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동법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가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 제23조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반기(半期)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22조(거주지 보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 · 근로형태 · 근무기간 · 임금수준 · 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 · 지출 ·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 제22조제4항4)은 통일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자료가 통일부장관에게 제공되어 실태조사를 위한 사항에 이미 포함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 제4조의3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제3항도 취업현황, 주거현황, 경제상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음.

3)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2조(거주지 보호)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현황]

구 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반기보고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3조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제3항		
주 기	6개월	1년		2년
기 간	매해 1월, 7월	매해 5~8월 사이 약 3개월		
대 상	사회진출일부터 5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	2,500표본 * 만15세이상('97년 이후 입국자)		만10~18세 탈북청소년 전수
		· 입국 전 사항 · 생활안정 · 직업교육훈련 · 일에관한 사항 · 구직에 관한 사항 ·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	· 보건 및 건강 · 교육 · 가족 · 사회적 관계망 · 자녀 양육과 돌봄 (부가조사)	· 입국 전 교육 경험 · 교육 현황 · (재학생)학교생활 · (비재학생)생활 관련 사항 · 일상생활, 진로·진학 · 신체·심리건강 · 가정생활, 지원 · 사회적 관계망·관심사

자료: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정기적 심리상담 및 검진 규정 신설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우울·불안·고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u><신설></u> ① (생략)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제22조의3(심리상담 등) ① 통일부장관은 <u>우울·불안·고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 -----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등의 대상

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 다.	<u>· 방법 · 절차 및 제2항 · 제3항--</u> ----- ---
---	--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돕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이하 “하나원”)에 정신과 진료실을 두고 있으며,⁵⁾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의3⁶⁾에 따라 거주지 전입한 후에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문상담사제도는 사회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문상담사는 심리·생활분야와 취업분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5) (통일부 하나원)

- 교육생 대상(입소기간 중)
 - (마음건강센터 운영) 교육생 대상 심리상담, 정신과 방문 진료 및 외부기관 협업 치료
- 수료생 대상
 - (하나마음쉼터 운영)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심리 치유가 필요한 탈북민을 발굴하여 마음건강 회복 지원

(하나재단)

- 지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전문상담사(44명)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대상 심리치료비, 의료비(정신질환) 지원사업 실시(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2024년 전문상담사 분야별 상담건수〉

(단위: 건)

취업	주택	교육	취약/생계	가정문제	정신건강	신체건강	법률	기타	총계
20,149	485	1,665	3,923	1,048	6,905	6,126	557	3,230	44,088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및 국내 정착과정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정신건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는 전문상담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전문상담사의 상담영역이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취업지원 등으로 광범위하고, 직접 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1조에 따른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및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치유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현재 운영중인 전문상담사 제도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주요한 분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문상담사와 업무 영역과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둘째,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심리상담으로 해결할지, 의료서비스로 해결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도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의료서비스를 의무화하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질병의 양상 및 치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기존 전문상담사 제도와 충돌이 발생하고, 탈북민 전문 상담센터의 활용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5(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 북한이탈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된다. 1.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2.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등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⁷⁾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동법이 정하는 요건이나 자격 심사 없이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함.

□ 다음으로, 「사회보장급여법」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조사, 수급

7)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8)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

자격 조사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절차 및 정보제공의 범위 등에 관하여도 동법 제2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을 비롯하여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정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또한, 동법 제19조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조의2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위반시 처벌규정 등을 둬으로써 단순히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도록 하지 않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 제26조의5는 3개월 이상 거주불분명, 6개월 이상 무소득, 주민등록말소 사실만으로 「사회보장급여법」상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의 취지 및 기능, 지급요건 및 관리, 제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없이 타법률에서 그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 중 3개월 이상 거주불분명, 6개월 이상 무소득, 주민등록말소된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주민등록의 말소는 주민의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예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바, 개정안의 경우 ‘주민

등록 말소'를 '거주불명 등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제적 지표와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의 말소는 주민의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등 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말소 대신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위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 주거불안,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위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통일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계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3. 의료비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9)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

9)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

주민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통일부 소속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고,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법 제11조), 사회적응교육(법 제15조),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 주거지원(법 제20조), 정착지원금 지급(법 제21조), 교육지원(법 제24조)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음.

이외에 동법 제26조¹⁰⁾는 제11조¹¹⁾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0)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11)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복한 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재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보호도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 종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을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생계비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개정안 제27조의2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체계상 개정안에 따른 경우 「북한이탈주민법」 제6조의 협의회 심의 사항에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위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의 경우에는 위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현재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위기가구로 파악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위기가구를 발굴함에 있어 실업급여 이력 등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우선공급 제도 운영 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재계약요건(소득·자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유형별 최대거주기간¹²⁾까지 거주가능하므로 개정실익 없다는 의견임.

12) (영구) 50년, (국민) 30년, (통합공공임대) 제한없음

※ 참고자료

실태조사 문항

□ 정착실태조사

조사 부문	조사 항목
입국 전 사항 (4개)	1. 탈북동기 2. 탈북시기 3. 북한에서의 직업 4. 제3국에서의 직업
생활안정 (10개)	1. 현재 거주 주택 2. 남한 생활 만족도 3. 남한 생활 만족 이유 4. 남한 생활 불만족 이유 5.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6.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7.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8.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9. 자식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10.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직업교육훈련 (4개)	1.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분야 3. 직업교육훈련 수료 여부 4. (직업교육훈련 수료한 경우)동일분야 근무 여부
일에 관한 사항 (21개)	1.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2. 지난주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는지 여부 3.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는지 여부 4. 지난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는지 여부 5. 평소 1주일간 총 근무 시간 6. 평소 1주일간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7. 지난주 실제 총 근무 시간 8. 지난주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9.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 원하였는지 여부 10.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지 여부 11. 지난 4주간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이나 다른 일을 찾아 본 적이 있었는지 여부 12.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사업체 유형 13.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직원 수 14.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본인 업무 유형 15.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 근무 시작 년월 16.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 17.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와 고용계약기간 정하였는지 여부 및 고용계약기간 18. 지난 3개월간 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 19. 지난주 사회보험 가입여부 20.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경로 21.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기간
구직에 관한 사항 (4개)	1. 지난 4주간 구직 여부 2.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지난 4주 내 비구직 이유 4. 구직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개)	1. 지난주 직장(일)을 원하였는지 여부 2.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4. 구직 기간(지난 1년간) 5. 지난 주 활동 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2개)	1. 과거 취업 여부 2.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

□ 사회통합조사

조사 부문	조사 항목
보건 및 건강 (11개)	1. 평소 건강상태 2. 건강관리 실천 여부 3. 흡연 여부 4. 음주 여부 / 4-1. 음주 빈도 5. 의료기관 이용 여부 / 5-1.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6.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 6-1. 의료기관 서비스 불만족 이유 7. 질병 및 사고 경험 여부 8. 치료 및 약 복용 경험 여부 / 8-1. 치료 및 약 복용 일수 9.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 9-1.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이유 10. 스트레스 정도 11. 자살 충동 경험 / 11-1. 자살 충동 이유
교육 (6개)	1. 대학 휴학·중퇴 경험 2. 대학 휴학·중퇴 이유 3. 희망 교육 수준 / 3-1.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 4. 학생 자녀 유무 / 4-1. 자녀 거주 지역 5. 자녀 기대 교육 수준 / 5-1. 자녀의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 6. 자녀 교육비 부담 정도 / 6-1. 가장 부담되는 항목
가족 (11개)	1. 가구주와의 관계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 만 65세 이상·만 15세 이상·취업자 가구원 수 3. 배우자 유무 3-1. 배우자 출신 지역 3-2. 배우자 거주 지역 4. 함께 사는 가족 5. 부모 노후 부양에 대한 견해 / 5-1. 가족 중 부모 부양해야 하는 구성원 6. 결혼에 대한 견해 7. 이혼에 대한 견해 8. 재혼에 대한 견해 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10. 가사분담 실태 11.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 양육과 돌봄 * 부가 조사 항목	1. 자녀 수 1-1. (북한출생) 남한에서 거주하는 자녀 수 1-2. (제3국출생) 남한에서 거주하는 자녀 수 1-3. (남한출생) 남한에서 거주하는 자녀 수 1-4. 미취학·초등학생(만12세 미만) 돌봄 유형 1-5. 남한에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자녀 수(재학상태, 출생지, 생활거주지) 2.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 3. 한부모 가정 여부 4.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5. 자녀 양육시 도움을 받은 곳 6.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회적 관계망 (4개)	1. 인간관계 만족도 2.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인원 3.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4. 차별·무시당한 경험 / 4-1. 차별·무시당한 이유

□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부문	조사 항목
입국 전 교육 경험	1. 재북 시 교육 경험 2. 제3국 체류 시 교육 경험
교육 현황	1. 현재 재학 상태 2. 하나원 퇴소 후 학교 입학까지 걸린 시간 3. 학교 입학 전까지 주로 한 일
(재학생) 학교 생활	1. 현재 다니는 학교 유형 2. 학교생활 만족도 3. 학교생활 어려운 점 4. 학교공부 어려운 점 5. 학교성적 자기 평가 6. 학교성적 만족도 7. 가장 좋아하는 과목 8. 가장 어려운 과목 9. 학교수업에 대한 생각 10. 학교 친구들에 대한 생각 11. 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
(비재학생) 생활 관련 사항	1. 학교를 그만 둔 시기 2. 학교 그만 둔 기간 3. 학교 다니지 않는 이유 4. 학교 진학 계획 5. 경제활동 상태(상용직) 6. 경제활동 상태(임시직)
일상생활	1. 평일에 혼자 집에 있는 빈도 2. 일과 후 주로 하는 일
진로·진학	1. 희망하는 교육 수준 2. 장래희망 3. 직업 선택 시 고려 요인 4. 진로에 대한 생각
신체·심리 건강	1. 건강상태 자기 평가 2. 평균 수면시간 3. 식습관(아침, 점심, 저녁) 4. 신체활동 여부 및 활동시간 5. 스트레스 정도 6.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 7. 자신에 대한 생각 8. 평소 주관적 우울감
가정생활	1. 가족생활 만족도 2. 가족 경제적 형편 평가 3. 부모님과 함께 한 활동 4. 부모님과 대화시간 5. 부모님의 관심 정도
사회적 관계망	1.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 2. 어울리는 친구 출신 3. 친한 친구 수
사회적 관심사	1. 남한 사람들의 인식 평가 2. 북한 출신 공개
지원	1. 필요한 지원 2. 지원 정보 얻는 곳

문 의 처
02)6788-5267